

서울신학대학교 담임지도교수제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신학대학교 담임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담임지도교수라 함은 서울신학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 (지도이념) 담임지도교수는 본교의 설립이념에 따라 담당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촉) 담임지도교수는 매 학기 초 학과장 또는 학부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단 특별한 상황이 인정 될 경우 학생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 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담임지도교수는 학과에서 재학생을 기준으로 매학기 위촉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 전 마지막으로 배정된 지도교수가 지도 한다.

제6조 (운영) ① 담임지도교수는 상담을 통해 각 학생의 신앙, 학사, 면학, 진로, 취업, 기타 일신상의 문제 등을 지도한다.

② 담임지도교수는 매학기 재학생 당 1회 이상 상담하여야 한다.

③ 담임지도교수는 학생상담 결과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⑤ 담임지도교수는 학생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긴급 사태가 예상 또는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지도) ① 학생처장은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지도를 별도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특별지도를 요청 받은 교수는 대상 학생의 사유에 따라 유관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내용을 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지도교수는 사유가 사라지는 즉시 자동 해촉된다.

제8조 (회의) 학생처장은 학과 지도교수 회의 또는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생지도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자료) 학생처장은 지도교수의 학생 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지도교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관리) 지도교수는 상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에 의한다